

2018년 서울물연구원

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과업내용서

2018. 02.

서울특별시
서울물연구원

1. 용역명

2018년 서울물연구원 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

2. 목적

- 가. 본 내용서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험 및 측정장비의 교정을 실시함에 있어 계약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.
- 나. 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시험장비 14종/114점에 대하여 KOLAS 교정 절차에 따른 정밀정확도 유지 및 소급성을 확보를 위한 검교정을 실시하고자 한다.

3. 용역기간

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, 시험장비 사용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1, 2차로 구분하여 1차 의뢰기기 교정완료 후 2차 기기를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.

4. 수탁기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

- 가.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(한국인정기구)의 인정을 받은 국제공인교정기관 이어야 한다.
- 나. 모든 교정업무 수행시 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교정자격자가 정해진 교정방법을 통하여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고, 수행 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업체는 교정 전에 시험장비 관리 담당자에게 시험장비의 교정범위 및 스펙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해당 시험장비 관리 담당자가 요구하는 특이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.
- 라. 선정된 교정업체는 ‘다’항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정범위 및 교정방법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교정검사를 완료한 기기에 대하여 교정 시험성적서 원본 및 교정 필증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5. 일반 사항

- 가. 교정기관은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사본을 “연구원”에 제출해야 한다.
- 나. 교정검사는 출장교정(소재장소 교정)을 원칙으로 하며, “연구원”이 지정하는 교정검사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
- 다. 교정기관은 출장교정이 불가능한 기기에 대하여 반출교정을 실시하되, “연구원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실시한다.
- 라. 교정기관은 반출교정을 위하여 기기의 운송과정에서 분실, 파손, 변형 등으로 인하여 시험 장비가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 한 경우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험 장비로 대체, 납품하여야 한다.

6. 성능 보장

- 가. 교정이 완료된 시험 장비의 성능보장 기간은 교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.
- 나. 교정검사 실시 후 시험 장비의 신뢰도는 기존 정상 시험장비류와 동등하거나, 그 이상이어야 한다.
- 다. 성능보장기간 중 측정기기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교정기관은 무상으로 재교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단, “연구원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. 대가의 지급

- 가. 시험장비의 고장, 손상 등으로 인하여 교정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비용은 제외하여야 하며, 교정검사 완료분에 대하여만 정산(표준 소급료 포함) 지급한다.

8. 기타 사항

교정기관은 계약 전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“연구원”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

야 한다.

※ 붙임 : 2018년 시험장비 교정검사 대상목록 1부. 끝.